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14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자치법규의 입안 및 정비 기준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소 예고기간과 단축 사유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자치입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기준 구체화 (안 제3조제1항)

나. 입법예고 하지 않는 경우 기준 구체화 (안 제5조제2항)

다. 입법예고 기간과 단축하는 경우 최소기간 확보 규정 (안 제8조)

라. 자치법규 정비기준 구체화 (안 제13조제5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고려해야 한다”를 “고려해야 하며, 시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예고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을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려는”으로 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제2항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최소 10일 이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

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수행”을 “행정 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명확하지 않은 문장이 사용된 규정

제14조제2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을 “제정·시행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필요할”을 “훈령·예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예고 기간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치입법안 작성 및 심사) ①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자치입법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및 절차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조(자치입법안 작성 및 심사) ① ---------- 고려해야 하며, 시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입법예고) ① (생 략)	제5조(입법예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입법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예고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려는 ----------.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8조제2항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신 설>	제8조(예고기간) ① ---------- 20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최소 10일 이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생략) ② 시장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 접수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체 없이 ---------- 통지해야 ------.
제12조(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	제12조(시행유예기간) ---------- ---------- 해야 ------. ---------- 시행해야 ---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제13조(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검토·정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3조(자치법규 정비) ---------- ---------- ---------- ---------- ---------- ----------.
1. 오랜 기간동안 수정·보완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	1. --- 기간 동안 ----------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응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규정	4. ---------- ------ 행정 수행---------- ----------
<신 설>	5.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명확하지 않은 문장이 사용된 규정
제14조(입법의견 제출) ① (생략)	제14조(입법의견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치입법에 관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입법안에 반영하거나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 ---------- ---------- ---------- 추진해야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③ ----------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 또는 반영 계획을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 발전 및 세수증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이 자치입법에 반영된 경우에는 의견 제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통보해야 ---------- ---------- ---------- ---------- ---------- ----------.
제15조(훈령 등의 준용) ① 시정 수행에 필요한 훈령·예규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1조 및 제1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훈령 등의 준용) ① ----- ---------- 제정·시행하려는 ---------- ----------.
②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훈령·예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 ---------- ----------.